의 안 번 호 596 【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】

검 토 보 고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·제출자 : 2007. 11. 21(수)·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07. 11. 26(월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07. 12. 05(수)

2. 제정이유

2007. 9. 3 울산혁신도시(택지)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우리구 신청사 부지가 혁신도시 내로 실시계획이 확정되어, 이에 따라 중구 청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하려는 것임

3. 주요골자

- 가.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출금 및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으로 하고, 기금의 용도는 신청사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의 경비함(안 제2조, 안 제3조)
- 나. 신청사 건립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심의 위원회를 두고 이를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토록 함(안 제6조)
- 다.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와 기금운용의 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 제출하도록 함(안 제8조, 안 제9조)

4. 관련법규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- 나.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(행정자치부 제237호 2007.5.7)

5. 검토의견

- 가. 우리구의 재정 여건상 구청사 이전에 따른 예산을 일시에 확보하 기는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러한 대단위 사업 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기적 예측을 갖고 미리 준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합니다.
- 나. 다만, 안 제2조 기금의 재원중 제2호 국·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전액을 신청사건립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공규재산 중 구 소유의 매각대금은 구 계획에 따라 전액을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적립이 가능할 것이나, 국가소유의 재산 매각대금을 중구신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이나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.